LPG 허가사용시설 검사업무 착안사항

< 2014. 7. 2, 검사지원처 >

1. 목 적

- 사용중인 LPG 저장탱크에 설치하는 액중펌프의 검사방법을 명확히 하여 민원발생 및 현장 검사오류를 예방하고,
- 검사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공업체 적정여부 및 건축물 연면적 확인방법을 안내하여 검사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현 황

- ① LPG저장탱크 액중펌프 수리검사 대상여부 미확인
 - o (질의회신) LPG 저장탱크의 맨홀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, 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리검사 대상으로 회신(검사지원센터-106459)
 - o (시설검사) LPG 충전소내 저장탱크 액중펌프 설치로 인한 변경 완성 검사시 대부분 수리검사 실시여부 확인 없이 검사처리
 - * 수리검사시 액중펌프의 비피괴검사, 내압ㆍ기밀검사 실시로 액법 변경검사와 중복으로 판단
- 2 현장검사시 시공업체 적정여부 등 확인 필요
 - o (현장확인) 검사시 시공업체 적정여부 및 건축물대장정보 등을 통한 검사 대상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

3. 착안사항

- ① LPG저장탱크 액중펌프 설치시 수리검사 대상 제외
 - o LPG충전시설에서 사용중인 LPG 저장탱크의 맨홀 뚜껑을 제거하고,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저장탱크 수리검사 대상에서 제외
 - 액중펌프 추가 설치시 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
 - * 제2014-2차 냉동기 · 특정설비분야 분과위원회 결과 반영(2014.6.24, 가스기술기준위원회사무국-60)
 - 저장탱크 액중펌프의 설치위치 변경·수량 증가시 변경기술검토/변경허가 후 완성검사 실시(액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)

- o 액중펌프 증설에 따른 변경 완성검사시 저장탱크 맨홀 플랜지와 액중펌프 플랜지의 **접합면은 상용압력으로 누출검사 실시**(KGS FP331~334 4.2.2.4.2)
 - 액중펌프의 비파괴검사·내압·기밀시험은 제조자의 자체검사 성적서 징구 를 통해 확인한 경우 해당 검사 생략



[2] 건설업체정보·스마트국토정보 검색 앱 활용

- 스마트폰·갤럭시탭에 '건설업체 종합정보'와 '스마트국토정보' 앱을 다운로드 하여 현장검사에 활용
 - (건설업체종합정보) '건설업체 종합정보' 앱을 통한 시공업체 걱정여부 현장확인
 - (스마트국토정보) 건축물 연면적 등 확인으로 검사대상 여부 등 판단에 활용



※ 안드로이드(play store), 애플(app store)에서 건설업체종합정보, 스마트국토정보 다운로드

